

제 호

영 화 업 신 고 증

1. 성명(대표자):
2. 생년월일:
3. 상호(법인명):
4. 영업소 소재지:
5. 영화업의 종류:
6. 유의사항

가. 신고가 취소되거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신고증을 반납해야 합니다.

나. 대표자의 성명, 상호(법인명),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화업의 종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 신고증을 첨부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.

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화업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도지사 ·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직인